

의안번호	2218759
의 퇴 인	박정의원
회 답 일	2026.5.13.
추계번호	26B245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8조 (공급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8조 (공급규정)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수도물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등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상금 및 보상심의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 참고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도 사고에 대한 보상 규모를 산정한 사례는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지방자치단체 산하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사례

구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춘천시
발생 연도	2019	2020	2019	2021
사고 내용	붉은 수돗물	수돗물 유출	수돗물 이물질	단수 피해
보상 대상	피해 지역주민	유출 발생 235가구	피해 지역주민	피해 지역주민
보상 항목	1. 수도요금감면 2. 생수 구매비 3. 정수기 필터 교체비 4.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5. 의료비 6. 수질검사비 7. 영업 보상(소상공인)	1. 저수조 청소비 2. 필터 교체비 3. 수질검사비	1. 수도요금 절반 감면 2. 생수 구매비 3. 필터 교체비 4. 저수조 청소비 5. 의료비 6. 수질검사비 7. 영업 보상(소상공인)	1. 수도요금 감면 2. 생수 구매비 3. 정수기 필터 교체비 4.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5. 저수조 청소비 6. 수질검사비 7. 영업 보상(소상공인)
보상 결정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보상 방법	피해자 신청(증빙첨부) → 심의 → 보상금 확정 및 지급	피해자 확정 → 신청(증빙첨부) → 심의 → 보상금 확정 및 지급	피해자 신청(증빙첨부) → 심의 → 보상금 확정 및 지급	피해자 신청(증빙첨부) → 심의 → 보상금 확정 및 지급
보상 금액	보상금 63억 원 요금면제 269억 원	-	보상금 63억 4,000만원 요금면제 별도	보상금 225억원 요금면제 별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될 경우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등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규모·운영방식 및 수도 사고의 발생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향후 발생할 수도 사고의 규모 또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